

[「신(新) 출입국·이민정책」 후속 조치]

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

① 숙련기능인력(E-7-4) 연간 비자 쿼터 3.5만 명 유지

② 4개 분야 기능인력(E-7-3) 비자 시범 도입

- 법무부는 기업·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,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“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”를 25년부터 정식 운영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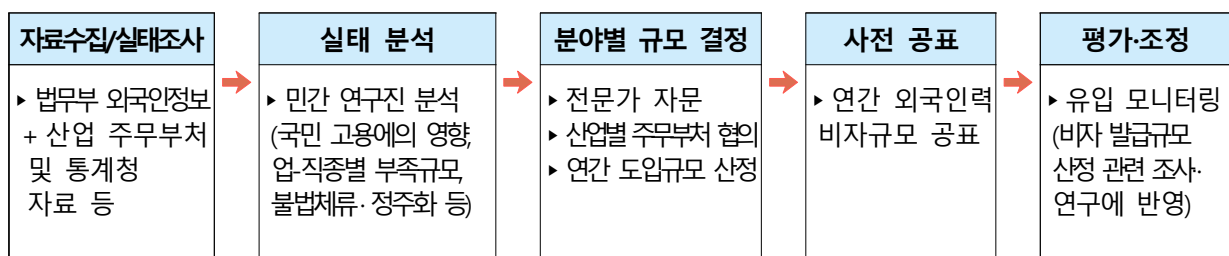
□ 법무부는 '24. 9. 26. 발표한 “신(新) 출입국·이민정책 추진방안”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“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”를 금년부터 본격 운영합니다.

○ 초고령사회 진입(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% 이상), 생산 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, 국민 일자리 침해·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합니다.

○ 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,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(숙련수준별)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*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“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”를 도입하였습니다.

* “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분석 연구(서울대 산학협력단 주관)”

<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흐름도 >



○ 법무부는 '25년 제도 정식 도입을 위하여 기존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,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분석 결과를 '25년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였습니다.

* 주요 분석 결과는 붙임1(취업비자 발급규모 산정 관련 주요 연구·조사 결과) 참고

□ 법무부는 상기 분석 결과 및 '24년 비자 발급 현황, 각 산업 주무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·축소 관련 의견,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'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.

○ (전문·기능인력 비자) 그간 전문·기능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로 도입규모를 제한하지 않되, 신규 도입 대상 분야('24년 시범 도입 분야 포함) 및 숙련기능인력 점수제(E-7-4) 비자에는 기존과 같이 발급규모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.

- (신규 도입 분야) 전문성·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(E-7-3)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△ 건설기계제조업 용접·도장원 △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·용접·도장원, △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·도장원 △ 도축원^(가능직군 한정) 등 4개 분야는 국민 고용 촉진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전제로 기능인력을 시범 도입*합니다.

* “비자 제언제”를 통해 시범 도입규모, 도입 요건, 도입 절차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며, 시범 도입 후 소관 부처가 제출한 지표(내외국인 임금, 종사자 규모, 입퇴직, 청년 및 고령자 비율 등) 종합 평가를 거쳐 외국인력 지속 도입 여부 결정

※ 지난해 시범 도입한 3개 분야 비자 최대 발급규모는 기존 수준 유지(요양보호사(E-7-2): 年 400명 / 항공기(부품)제조원 및 송전 전기원(E-7-3): 年 300명)

- (숙련기능인력 점수제) 제조업 단기·중기 기능인력 부족 규모 분석, '23~'24년 비자 발급규모 상한(연간 3.5만 명), 전환 가능 인원 시뮬레이션 결과,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'25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(E-7-4) 취득 가능 인원을 '24년과 동일하게 연간 3만 5천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.

○ (비전문인력 비자) 계절근로(E-8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 등 비전문인력 도입규모는 인력부족 규모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관련 관계부처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.

○ 취업비자는 발표된 발급규모 이내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외국인력 과다 유입, 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적시 대응할 예정입니다.

〈 '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(붙임2) 〉

구 분			업종	'24년 발급량 (비자 발급 상한)	'25년 비자 발급 상한	비 고
전문 · 기능 인력	신규 도입 (기능 인력)	판금·도장 정비원 (E-7-3)	자동차 종합수리업	해당 없음	추후 확정	□ “비자 제인제”를 통해 비자 발급규모, 발급 요건 등 확정 예정 □ '24년 시범 도입 3개 분야* 비자 발급규모 상한은 동일 수준(300~400명) 유지 * 요양보호사(E-7-2), 항공기(부품)제조원(E-7-3) 송전전기원(E-7-3)
		건설기계제조 용접·도장원 (E-7-3)	건설기계 제조업			
		자동차부품제조 성형·용접·도장원 (E-7-3)	자동차 부품 제조업			
		도축원 (기능직군 한정) (E-7-3)	도축업			
	숙련기능인력 (E-7-4)		제조업, 건설업 등	13,474 (35,000)	35,000 (‘24년과 동일)	□ 제조업 인력 부족 규모, 전환 시뮬레이션 결과, 최근 제도 개선사항 및 관계부처 의견 고려
비전문 인력	계절근로(E-8)		농·어업	56,802 (67,778)	74,689 ¹⁾	“법무부 배정심사 협의회” 결정('24.11.26.)
	고용허가제(E-9)		제조업, 건설업 등	81,470 (165,000)	130,000	제45차 “외국인력 정책위원회” 결정·공고 (‘24.12.27.)
	선원(E-10)		어업 등	21,644 ²⁾ (23,300)	23,300	총 체류인원 한도 내 발급 (‘24년과 동일)

1) '25년 계절근로(E-8) 비자 발급규모는 상반기 배정 인원 기준

2) 21,644명은 현재 기준 총 체류 인원을 의미하며, 비자 발급 건수를 의미하지 않음. 선원취업(E-10) 비자는 총 체류 인원 한도 내에서 비자를 발급하며, 분야별 체류 인원 한도 적용(연근해 어선원: 22,000명 / 내항선원: 1,200명(한도 확대 관련 노사 협의 진행 중) / 순항여객선원: 100)

□ 법무부는 '25년 제도 본격 운영과 아울러,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
범부처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,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
인력을 도입하는 비자 정책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입니다.

○ 특히, 불법체류·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요건
강화, 비자 발급규모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
억제하겠습니다.

□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매년 과학적 분석을 거쳐 외국
인력 도입 대상 분야 및 규모를 설정함으로써,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
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및
국민 고용 확대에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.

- ※ 붙임 1) 취업비자 발급규모 산정 관련 주요 연구·조사 결과
2) '25년 주요 취업비자 발급규모
3) 제조업·농업 외국인력 고용현황 조사 결과

담당 부서	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	책임자	과 장	최문정 (02-2110-4217)
	출입국·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	담당자	사무관	김명훈 (02-2110-4219)



① 중장기 인력부족 규모 전망('2030년 기준)

- 인력부족 규모를 ① 전국 ② 권역별(수도권, 광역시, 기타지역) 단위로 산출

<지역·분야별 인력부족 규모 전망>

구 분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
전국	제조업(25.3만)	사회복지업(22.2만)	도·소매업(15.7만)	음식·숙박업(14.6만)
수도권	정보통신업(16.8만)	제조업(15.9만)	도·소매업(12.5만)	사회복지업(6.8만)
광역시	제조업(8.2만)	사회복지업(7.2만)	음식·숙박업(4.7만)	도·소매업(4.7만)
기타지역	제조업(16.2만)	사회복지업(9.3만)	음식·숙박업(5.6만)	건설업(2.2만)

※ 상기 수치는 최소 부족 규모를 나타내며, 부족 규모가 외국인력 도입 필요 규모를 의미하지 않음

②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국민 고용·임금 효과

- (고용효과) 외국인 유입이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나, 분야별로 긍정적·부정적 영향이 함께 확인됨

- (산업) ▲금속가공 제조업 ▲전자·통신 제조업 ▲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(조선업 등)에서 **긍정적 영향**이 확인되나, ▲1차 금속 제조업 ▲건설업 ▲음식점업 등에서 **부정적 영향** 확인

- (임금효과) 관리·전문직군, 사무종사자 직군 임금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영향, 다만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임

- 수도권의 경우 관리·전문직 및 단순노무 직군의 임금에 **일부 부정적 영향**이 확인되나, 비수도권의 경우 사무종사자, 단순노무 직군 임금에 **긍정적 영향** 확인

③ 제조업·농업 외국인력 고용현황 조사 결과(상세 붙임3 참조)

- (제조업) 숙련기능인력(E-7-4) 전환 제도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7% 이상, 직무·생산성이 우수하여 기업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

※ 숙련기능인력(E-7-4) 전환 애로사항으로 꼽힌 근속(체류)기간, 한국어 요건 개선 완료('24. 11.)

- (농업) 인력 수요는 일용(일당제)>임시>상용 순, 80~90% 농가가 임시·일용 인력이 충분하다고 답해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성과 확인

가. 전문인력 취업비자(체류자격)

비자	비자에 해당하는 사람·활동범위	'25년 비자 발급규모 상한
교수 (E-1)	고등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또는 연구·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	별도 상한 없음
회화지도 (E-2)	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사람	
연구 (E-3)	자연과학·사회과학·인문학·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·개발에 종사하는 사람	
기술지도 (E-4)	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 제공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	
전문직업 (E-5)	변호사, 공인회계사, 의사 등으로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	
예술흥행 (E-6)	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, 연예, 운동경기 등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	
특정활동 (E-7)	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: 전문(E-7-1), 준전문(E-7-2), 일반기능(E-7-3), 숙련기능인력 점수제(E-7-4)로 세분류	신규 도입 분야, 숙련기능인력(E-7-4) 비자 발급규모 상한 설정 < '25년 신규 도입(예정) 분야(E-7-3) > □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·도장원 자동차 부품제조업 성형·금형·용접원 건설기계제조업 용접·도장원, 도축원(기능직) ※ '24년 신규 도입 분야 상한은 변동 없음 · 요양보호사(E-7-2): 年400명/ 항공기(부품)제조원, 송전 전기원(E-7-3): 年 300명 < 숙련기능인력 점수제(E-7-4) > □ 비자 전환 상한: 연간 35,000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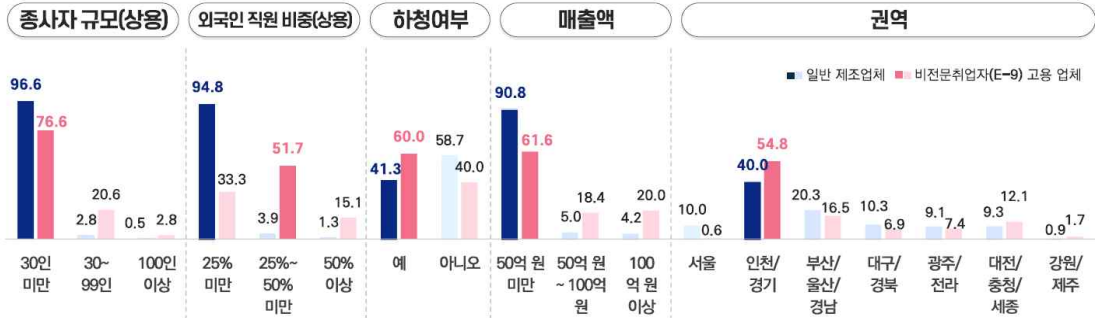
나. 비전문인력 취업비자(체류자격)

비자	비자에 해당하는 사람·활동범위	'25년 비자 발급규모 상한
계절근로 (E-8)	농작물 재배·수확,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 등에 종사하는 사람	상반기 배정 인원 74,689명 한도
비전문취업 (E-9) (고용허가제)	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조업, 농·어업 단순노무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	연간 고용허가 상한 130,000명 한도
선원취업 (E-10)	20톤 이상 연근해 어선 부원(E-10-2)	국내 총 체류 인원 22,000명 한도('24년과 동일)
	5톤 이상 내항상선 부원(E-10-1)	국내 총 체류 인원 1,200명 한도('24년과 동일)
	2천 톤 이상 순항여객선 부원(E-10-3)	국내 총 체류 인원 100명 한도('24년과 동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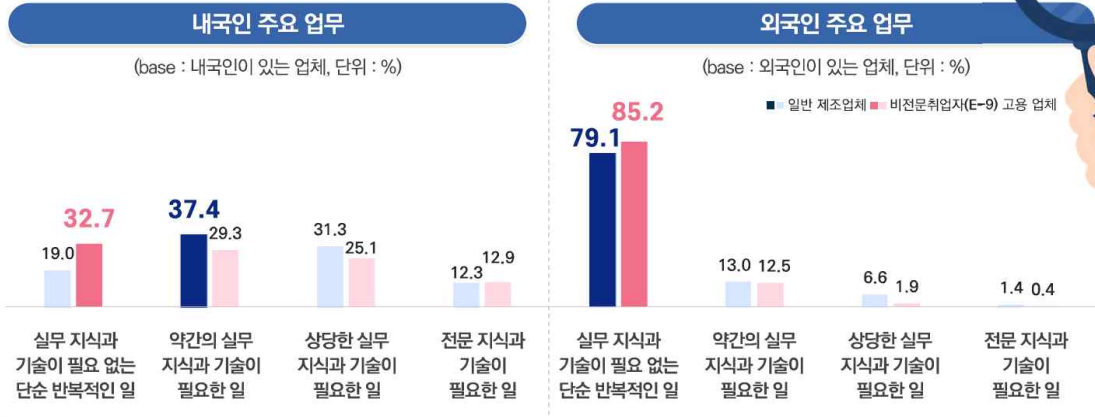
I. 제조업 분야 - (1)

응답 사업체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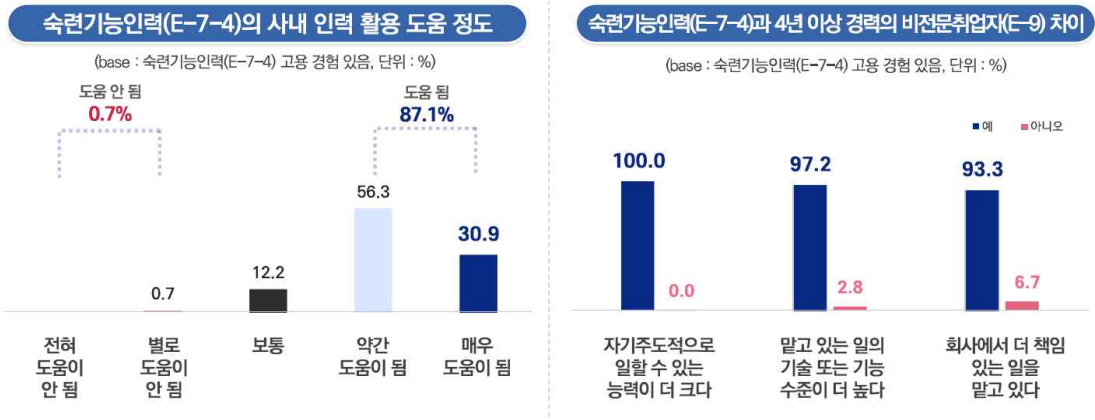
(base : 전체, 단위 : %)



근로자 주 업무 수행



숙련기능인력(E-7-4) 고용 효과, 일반 인력과 차이 : 비전문취업자(E-9) 고용 제조업체



I. 제조업 분야 - (2)

숙련기능인력(E-7-4) 고용 : 비전문취업자(E-9) 고용 제조업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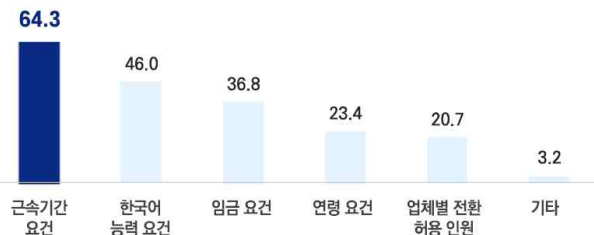
숙련기능인력(E-7-4) 고용 경험

(base : 전체, 단위 : %)



비전문취업자(E-9)의 숙련기능인력(E-7-4) 비자 전환 시 어려운 점

(base : 기존 고용 중이던 비전문취업자(E-9)의 숙련기능인력(E-7-4) 비자 전환, 중복응답, 단위 : %)



숙련기능인력(E-7-4) 고용 경로

(base : 숙련기능인력(E-7-4) 고용 경험 있음, 중복응답, 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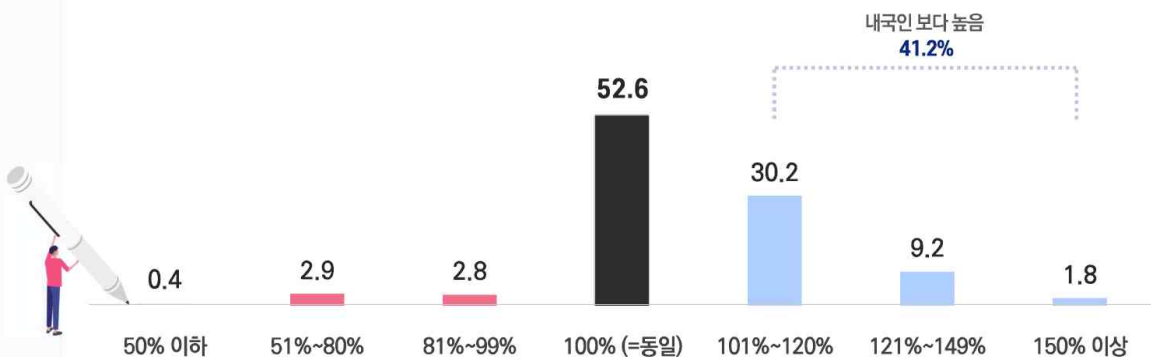
숙련기능인력(E-7-4) 고용 이유

(base : 숙련기능인력(E-7-4) 고용 경험 있음, '매우 동의' + '다소 동의', 중복응답, 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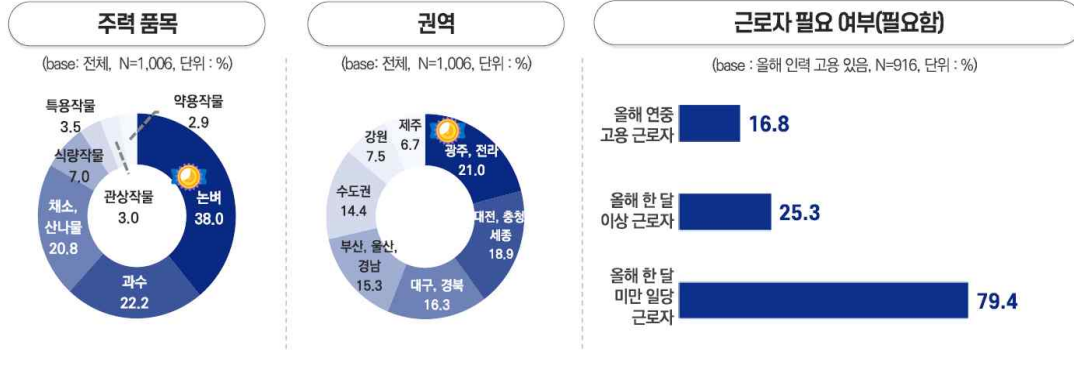
내국인 대비 숙련기능인력(E-7-4)의 생산성 : 비전문취업자(E-9) 고용 제조업체

(base : 숙련기능인력(E-7-4) 고용 경험 있음, 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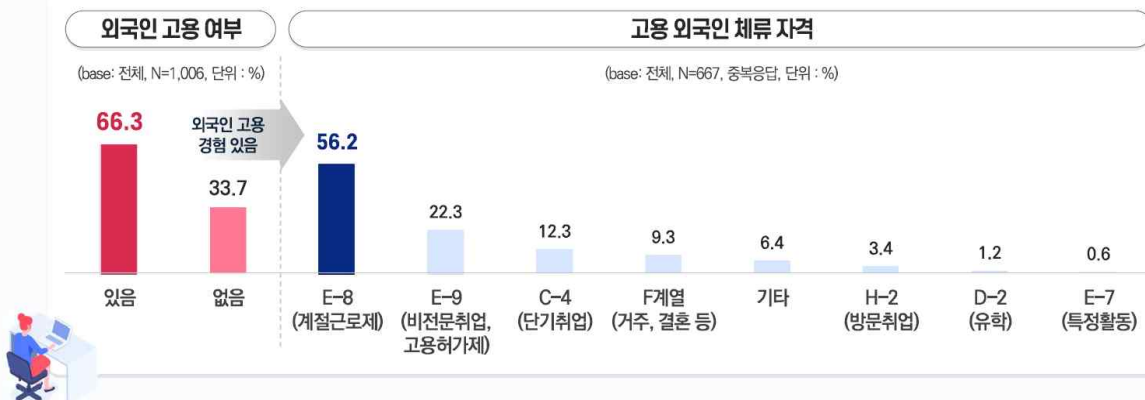


II. 농업 분야-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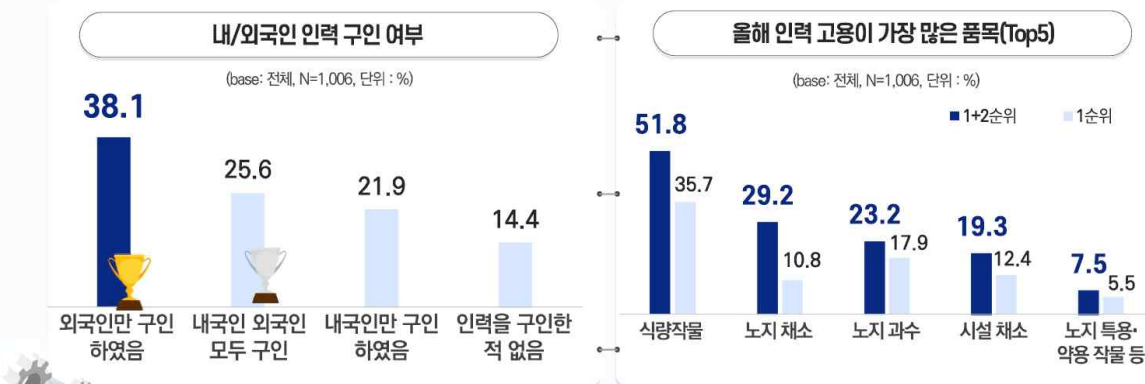
응답 농업경영체 특성 및 필요 인력 현황



농업경영체의 외국인 고용 여부 및 피고용자 체류자격



인력 구인 여부 및 인력 고용이 많은 품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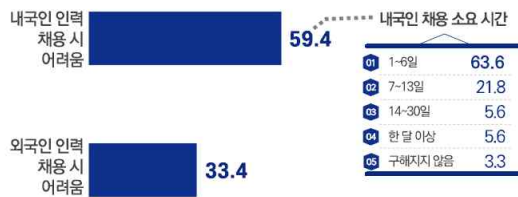


II. 농업 분야 - 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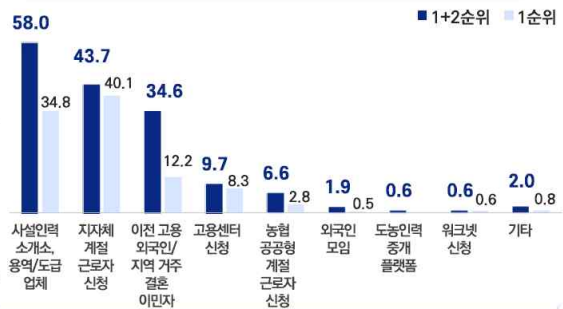
인력 채용의 어려움 및 외국인 채용 경로

(base : 내국인 인력 구인 경영체(N=478) / 외국인 인력 구인 경영체(N=641), 단위 : %)

인력 채용 시 어려움(매우 어려움 + 어려움)



외국인 채용 경로(1+2순위, 1순위)



농업경영체 인력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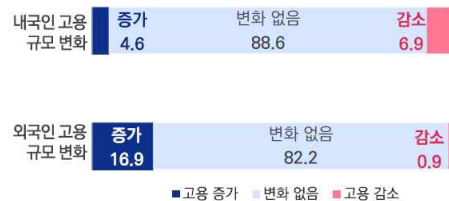
작년 근로자 충분 여부(충분함)

(base : 작년 한 달 미만 일당 근로자 고용함(N=748) / 작년 한 달 이상 근로자 고용함(N=194), 단위 : %)



농업 경영체 고용 규모 변화

(base : 전체, N=1,006, 단위 : %)



올해 농업경영체의 농번기

(base : 올해 인력 고용 있음, 1순위 N=916 / 2순위 N=519, 단위 : %)

